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,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(제14조, 제16조제3항 및 제23조 관련)

| | - | -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구 분 |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| 협의 요청시기 |
| 1. 도시의 | 가. 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 | 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|
| 개발사업 | 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 |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|
| /미린/미법 | 별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 | 특별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|
| | 도시개발사업 | 실시계획의 승인 전 |
| | 나.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제3호 |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17조에 |
| |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공주택지 |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|
| | 구조성사업 및 공동주택건설사업 | 전 |
| | 다. 「교육기본법」 제9조에 따른 | 1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|
| | 학교의 설치공사사업 |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 |
| | | 우: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 |
| | | 제4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 |
| | | 의 협의 전 |
| | | 2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 |
| | | 의 자가 학교시설사업을 시 |
| | | 행하는 경우: 「학교시설사업 |
| | | 촉진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|
| | | 시행계획의 승인 전 |
| | | 3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|
| | | 관한 법률」에 따라 학교를 |
| | | 설치하는 경우: 같은 법 제88 |
| | | 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|
| | | 인가 전 |
| | 라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|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|
| |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 | 한 법률」 제88조제2항에 따 |
| | • 군계획시설사업 | 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|
| | 마.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10호 | 「농어촌정비법」 제59조제2항 |
| | 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|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전 |
| | 바. 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항제2 | 「도시개발법」 제17조제2항 |
| | 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| 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|
| | 사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 | 1)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|
| | 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| 인 경우: 「도시 및 주거환 |
| | | 경정비법」 제50조제7항 본 |
| | | 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|

- 아.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|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| 제2조제2호 또는 제 | 관한 법률 | 제9조제1항 또는 9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개발사업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 또는 물류단지개발사업
- 자.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」 제22조에 따른 기업형임대 법」 제28조에 따른 기업형임 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
- 차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 널 설치공사사업
- 카. 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| 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권개발사업
- 타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16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9조제 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 1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사업
- 파. 「주택법」 제15조 본문에 따른 |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른 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
- 하.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2조제4호|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9조제1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
- 거. 「하수도법」 제2조제9호·제10 1 시·도지사가 설치하는 경 호ㆍ제11호 또는 제13호에 따른 우: 「하수도법」 제11조제2 공공하수처리시설 · 하수저류시 설·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또는 2)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설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. 다 만,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가 제16호에 따른 건축물 설치사 업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외한 다.

의 고시 전

2)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인 경우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 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 획인가 전

는 승인 전

|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의 승인 전

의 인가 전

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

지정 전

|업계획의 승인 전

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 계획의 승인 전

- 항에 따른 고시 전
- 하는 경우: 「하수도법」 제 11조제3항에 따른 인가 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가 전
- 3)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: 「하수도법」 제16조

| 2. 산업입 지 및 산업단 | 가. 「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 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 기술단지의 조성사업 | 제1항에 따른 허가 전 4)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: 「하수도법」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전 「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특례법」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산업기 |
|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지의 조성사업 | 나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다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하는 사업. 다만, 가목・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라.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| 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승인, 계약 또는 허가・인가・면허 등을 받기전 |
| |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다. 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| |
| | 로서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, 공항 및 배후지, 물류터 미널, 물류단지, 항만 및 배후지 조성사업. 다만, 자유무역지역 지정 전 산업단지, 공항 및 배후지, 물류터미널, 물류단지, 항만 및 배 | 전 |
| | 후지에 대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| |

협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. 바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 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 업 시계획의 승인 전 3. 에너지 가.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2조제5호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11조에 개 발 사 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및 따른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 업 정비사업 른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공고 전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 제6조 나.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 법」 제5조, 제9조 및 제10조에 제1항에 따른 위험물시설의 설치허가 전 따른 석유정제업, 석유수출입업 및 석유판매업의 시설 중 저장시 설,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 제17조에 따른 액화 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시설 중 저 장시설 또는 「한국석유공사법」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 축시설의 설치 다. 「송유관 안전관리법」 제2조제 | 「송유관 안전관리법」 제3조 2호에 따른 송유관 설치공사 제1항에 따른 인가 전 라. 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16호 및 「전기사업법」 제61조 또는 제16호의2에 따른 전기설비의 설 제6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 치사업 또는 전선로 설치사업 가 또는 신고 전 마.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2호 |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6조에 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전 는 정비 사업 바. 「전원개발촉진법」 제2조제2호 | 「전원개발촉진법」 제5조제1 가목에 따른 전원설비를 설치ㆍ| 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개량하는 사업 사. 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 제2조제6 | 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 제6조 에 따른 열 생산시설의 신설 호에 따른 공급시설의 설치 및 정 등의 허가 전 또는 같은 법 비사업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 인 전 아. 「한국가스공사법」 제16조의2 「한국가스공사법」 제16조의 제1항 본문에 따른 가스사업 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.

다만, 「한국가스공사법 시행

| | | 령」 제14조의3제1항제4호의 가스사업의 경우에는 인·허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가등 전 |
| 4. 항만의 | 가. 「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| 「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|
| 건 설 사 |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|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|
| 업 |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개발사업 |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|
| | 나. 「신항만건설 촉진법」 제2조제 | 「신항만건설 촉진법」 제8조 |
| | 2호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. 다 |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 |
| | 만, 「신항만건설 촉진법」 제2조 | 인 전 |
| | 제2호마목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| |
| | 은 제외한다. | |
| | 다. 「어촌・어항법」 제2조제5호 | 1)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: |
| | 에 따른 어항시설 건설사업 또는 | |
| |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어항개발 사업 | 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확정 전 |
| | | 2)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시행 |
| | | 하는 경우: 「어촌·어항법」 |
| | |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행허 |
| | | 가 전 |
| | | 3)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기관 |
| | | 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|
| | | 장이 시행하는 경우: 「어 |
| | | 촌·어항법」 제23조제3항에 |
| | | 따른 지정권자와의 협의 전 |
| | 라. 「항만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| 1)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: |
| | 항만시설 건설사업 | 「항만법」 제9조제6항에 따 |
| | | 른 항만공사의 고시 전 |
| | | 2) 「항만공사법」에 따른 항 |
| | | 만공사가 시행하는 경우: 같 |
| | | 은 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 |
| | | 회의 승인 전 |
| | | 3)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 |
| | | 는 경우: 「항만법」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 |
| | | 제2항에 따른 항단증사 시행 |
| | - 마. 「항만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| , , _ |
| | 항만재개발사업 | 시계획의 승인 전 |
| 5. 도로의 | 「도로법」 제2조제1호 및 「국토의 | |
| 건 설 사 | | |
| | | |

| 1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업 | 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| 경우: 같은 법 제25조에 따 |
| | | 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|
| | | 2) 「도로법」 제2조제5호에 |
| | |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 |
| | | 가 시행하는 경우: 같은 법 |
| | | 제36조에 따른 공사 시행의 |
| | | 허가 전 |
| | | 3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|
| | |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|
| | | 따른 도시・군계획사업으로 |
| | | 건설하는 경우: 같은 법 제88 |
| | | 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|
| | | 이가 전 |
| 6. 수자원 | 가.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6호에 | 「농어촌정비법」 제9조에 따 |
| 의 개발 | 파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설치사업 | 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 |
| 사업 | | 행계획의 수립 전 |
| / 1 H | 나. 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| |
| |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| 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|
| | 대 설치사업 |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|
| | | 의 수립 또는 승인 전 |
| | │ │다. 「수도법」 제3조제18호에 따른 | |
| | 수도사업 | 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또는 |
| | 1 - 1 - 1 - 1 - 1 - 1 - 1 - 1 - 1 - 1 |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전 |
| | 라. 「하천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| |
| | 하천시설 설치사업 |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 |
| | Order to territoria | 우: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|
| | |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전 |
| | | 2) 「하천법」 제8조에 따른 |
| | |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 |
| | | 행하는 경우: 같은 법 제30 |
| | | 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|
| 7. 철도(도 | 가. 「궤도운송법」 제2조제7호에 | , , , , , , |
| 시철도 | | |
| 를 포함 | | 은 법 제5조에 따른 전용궤도 |
| 한다)의 | 기도 건이미스된 스텀인터/ | 의 승인 전 |
| 전 설 사 | 나. 「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및 | ' |
| 신결 / 업 |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도시 | |
| ਮੁੱ | 제3오에 따는 도시철도 및 도시 철도시설의 건설사업 | /기념/기탁기 ㅎ년 선 |
| | 다. 「철도건설법」 제2조제7호 또 | |
| | 이. 결소선권합] 제2호제(호 호 | 1/ 국도에 계속 롯 의중에 |
| | | I |

| 8. 공항의 건설사 업 9.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 업 | 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「공항시설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「하천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 공사 사업 | 따른 도시·군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: 같은 법 제88 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2) 그 밖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: 「철도건설법」 제9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|
|---|--|---|
| 10. 관광 단지의 개발사 | 가. 「관광진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| 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: 「하천법」 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 전 「관광진흥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전(관광 숙박업은 같은 법 제15조제1 |
| 업 | 나. 「관광진흥법」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 | |

지의 조성사업

- 법률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 도시 · 군계획시설사업 중 유원지 | 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의 설치사업
- 라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1)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법률 |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 | 시설의 설치사업

마. 「온천법」 제10조의2제4항에 「온천법」 제10조제1항에 따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온천 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개발사업

- 11. 특정 지 역 의 개 발 사 업
- 가.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」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 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나. 「기업도시개발 특별법」 제2조 | 「기업도시개발 특별법」 제12 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
- 다. 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 연기 ·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 한 연기 · 공주지역 행정중심 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 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의 건설사업
- 라. 「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 |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 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 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계획 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한미 의 승인 전 군시설사업
- 마. 「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 | 「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

다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|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

- 관한 법률| 제19조의2에 따 른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: 같은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전
- 2)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| 제19조의2에 따 른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: 「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 획의 인가 전

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

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

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 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 역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전

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 특별법」 제23조에 따른 개발 계획지구의 개발사업

바. 「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 1) 「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 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 법」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 사업

- 사.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|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
- 아. 「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」「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 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 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 역조성사업(같은 법 제26조에 따 시계획의 승인 전 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 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)
- 자.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호부터 제16호까지에 해당하는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 실시계획의 승인 전 위에 해당하는 사업 중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

- 계획의 승인 전
 - 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16조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 른 자가 시행하는 경우: 같 은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 전
 - 2) 「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호에 따 른 자가 시행하는 경우: 같 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전

실시계획의 승인 전

- 시설의 설치사 업
- 12. 체육 가. 「경륜·경정법」 제2조제1호· 「경륜·경정법」 제5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 에 따른 허가 전 설의 설치사업
 - 나.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0조 1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하는 경우: 「청소년활 설치사업

- 동 진흥법 |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 전
- 2)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설 치하는 경우: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1조제3항에 따

| | 다.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47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 라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| |
|--|---|--|
| 13. 폐기 물 처 리 설 치사업 | 마. 「한국마사회법」 제4조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사업 가.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사업 나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 | 른 경마장 설치허가 전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2조, 제24조,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 전,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전,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 전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 전 |

| | | 리시설의 설치승인 전 또 는 설치신고 전 나)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 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 3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 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전 |
|----------|---|--|
| 14. 국방 | , | |
| • 군사 | | _ |
| 시설의 | 시설사업 | •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|
| 설치사 | | 승인 전 |
| 업 | | |
| 15. 토석 • | 가. 「골재채취법」 제22조에 따라 | 「골재채취법」 제22조제1항 |
| 모래 • | 지하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 | 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전 |
| 자갈 등 | 나. 「하천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| 1)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하 |
| 의 채 |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| 는 경우: 「수도법」 제7조 |
| 취사업 |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 토석・모 | 제4항에 따른 행위허가 전 |
| | 래·자갈을 채취하는 사업 | 2)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: |
| | | 「골재채취법」 제22조에 따 |
| | | 른 골재채취의 허가 전 |
| | | 3) 그 밖의 경우: 「하천법」 |
| | | |
| | |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 |
| | | |
| 16. 기타 |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|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 용허가 전 |

비고

- 1.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 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는 대상사업의 협의 요청시기로 한다.
- 2.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하안전영향평 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.
 - 가.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 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
 - 나.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
 - 다. 굴착 지역이 「산지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 또는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바다 및 바닷가인 사

라. 그 밖에 보안상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지하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